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5
----------	-------

발의연월일 : 2026. 9. 14.

발 의 자 : 이강일 · 황운하 · 강준현
박홍배 · 김남근 · 김우영
백혜련 · 민병덕 · 송재봉
이훈기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등의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및 시정명령 등은 담합으로 인한 불법 이익을 사후적으로 환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데 그쳐, 담합을 지속하게 만드는 시장구조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고 반복적인 담합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실효적 억지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결합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주식처분 및 영업양도 등 구조적 시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담합에 대해서는 사업매각명령 등 구조적 제재 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담합을 직

접 지시·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제재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징금의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며,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배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상향함. 또한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시정명령으로 재발 방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사업 부문의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3조의2 신설, 제44조, 제44조의2 신설, 제109조 및 제11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30”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4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의 매각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최근 10년 이내에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 방지 및 공정한 경쟁 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사업매각명령”이라 한다)

를 명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2.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매각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매각명령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확보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하여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44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주도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를 강요한 자의 경우”로 한다.

제5장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위반 임원에 대한 취업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의 임원이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및 임원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를 한 자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
2. 동일·유사 업종의 회사의 임원·종업원으로서의 취업 제한

제109조제2항 본문 중 “3배”를 “3배(최근 5년 이내에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실이 있거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5배)”로 한다.

제111조제1항 본문 중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를 “자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u>100분의 20</u> 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u>40억원을</u>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조(과징금) ① ----- ----- ----- ----- <u>100분의 30</u> ----- ----- ----- ----- <u>60억원</u> ----- ----- -----.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u>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u>
<신 설>	제43조의2(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사업의 매각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u>최근 10년 이내에</u>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43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 방지 및 공정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사업매각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2. 부당한 공동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매각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매각명령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행확보 및

③ ~ ⑤ (생략)
<신설>

1. 해당 행위를 한 자의 임원
직무집행 정지

② ~ ⑤ (생략)	
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과 같음)